

신구조문대비표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450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	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604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<p>제9조(수수 등의 제한) ① (생 약)</p> <p>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·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</p> <p>2.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,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</p> <p>3.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·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</p> <p>③ (생 약)</p>	<p>제9조(수수 등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</p> <p>가.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·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</p> <p>나.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, 마약류취급승인자(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 또는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</p> <p>2.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·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</p> <p>3. 「약사법」 제91조에 따른 한국회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